

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대한 소명서

광고주 ID	
상호 또는 업체명	
대표자명	
사업자등록번호	
광고대상 URL	

『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 12 조 및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『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에 관한고시』 따르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 됩니다.

- 다 음 -

1. 최근 6 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20 회 미만인 경우
2. 최근 6 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1,200 만원 미만인 경우

본인이(또는 업체가) 최근 6 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하여 거래를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	회
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	원

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본인이(또는 본 업체가)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라는 것을 소명하고자 하여,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 합니다.

- 서면 제출 후 판매횟수/판매금액 변화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귀 사에 통지하고 모든 광고 게재를 중지할 것을 약속합니다. 또한 귀 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 후 광고를 재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___동의
- 사이트 내 광고비 등 지출 내역, 제 3 자 신고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귀사에서 본인에게(또는 본 업체에) 추가 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또는 매출 입증 자료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, 본인은(또는 본 업체는)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 (광고 게재 중지 등) 에 대해 귀 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합니다. ___동의
-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보증하며, 서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면의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이며 귀 사를 면책하고 귀 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동의합니다. ___동의

201____.____.____.

성명 또는 대표자명 : _____(날인 또는 서명)

주식회사 카카오 귀중